#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의 안 번 호

1963

2020. 12. 18. 도시계획관리위원회수 석 전 문 위 원

## 1. 제안경위

○ 2020. 10. 16. 이성배 의원 발의 (2020. 10. 26. 회부)

# 2. 제안이유

- 서울시는 사회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토지를 출자하여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저렴하게 임대하거나, 부동산투자회사인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를 설치·운용하여 저렴한 토지를 임대·공급하는 방식으로 사회주택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.
- 그러나 현재 사회주택 공급을 위한 토지의 출자 또는 부동산 투자회사 설치에 대한 근거 규정은 조례에 마련되어 있지 않 은 바, 사회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안정적인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공급할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출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(안 제9 조제4항)
- 시장 등이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와 공동으로 사

회주택 공급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.(안 제 10조제2항)

# 4. 검토의견

○ 이 개정조례안은 사회주택 유형(붙임-2 참조) 중 '공공토지 임대형' 사업의 지원근거와, 부동산투자회사(이하 '리츠') 등의 시행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으로 이성배 의원이 발의하여 2020.10. 26.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임.

| 개정조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 정 사 항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제9조제4항 신설<br>(市⇒SH공사<br>토지매입비 출자 근거) | 시장은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공급할 토지의<br>확보를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(이하 "공사"라 한다)에<br>출자할 수 있다. 이 경우 공사는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<br>주체에게 토지를 임대하며 대부료는 제3항을 준용한다. |
| 제10조제2항 신설<br>(리츠 또는 펀드의<br>사업추진 근거) | 시장 등은 「부동산투자회사법」에 따른<br>부동산투자회사 또는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<br>법률」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공동으로 사회주택<br>공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○ 공공토지임대형1) 사회주택은 대부분 '토지지원리츠' 방식으로 공급 되고 있는데, '토지지원리츠2)'는 서울주택도시공사(이하 'SH공사') 와 주택도시기금이 토지매입비를 리츠에 출자하면 리츠가 토지를

<sup>1)</sup> 공공토지(건물)임대형에는 토지지원리츠, 사회주택리츠, 빈집매입 등이 있는데, 대부분 토지지원리츠 방식으로 공급됨. 그 밖에 '한강진역 공영주차장 활용 사회주택 건립'이 진행 중임.

|      | ac 고그라 빈 집 |      |            | 공공토지(건물)임대형 |             |      | 기타   |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--|
| 연도   | 공급량        | 살리기  | 토 지<br>임대부 | 토지지원<br>리 츠 | 사회주택<br>리 츠 | 빈집매입 | 리모델링 | 사회적<br>주 택 |
| 계    | 2,425호     | 246호 | 257호       | 651호        | 94호         | 264호 | 421호 | 492호       |
| '15년 | 102호       | 80호  | 22호        | _           | _           | _    | _    | _          |
| '16년 | 304호       | 152호 | 115호       | _           | _           | _    | 37호  | _          |
| '17년 | 239호       | 14호  | 71호        | _           | _           | _    | 154호 | _          |
| '18년 | 301호       | _    | 49호        | 118호        | 94호         | _    | 40호  | _          |
| '19년 | 911호       | _    | _          | 220호        | _           | 144호 | 144호 | 403호       |
| '20년 | 568호       | (중년  | 단)         | 313호        | _           | 120호 | 46호  | 89호       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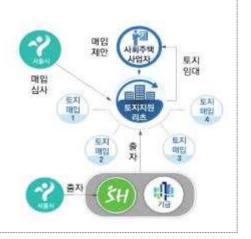
2) SH공사와 주택도시기금이 1:2로 출자하여 2018.10월 설립함.

매입하여 사회적 경제주체에 임대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며, 이 때 서울시는 SH공사로 토지매입비를 지원(출자)하게 됨.

○ 그 동안 서울시는 SH공사에 토지매입비를 「지방재정법」제18조 및 「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출자해왔으나, 사회주택 사업의 추진근거인「서울특별시 사회 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에도 출자근거를 명확히 규정하 기 위해 이 개정조례안이 발의된 것으로 이해됨.(안 제9조제4항)

#### <토지지원리츠 공급방식의 주체별 역할>

- ▶ (**사회적 경제주체**) 사업기획, 주택건설 및 주택관리, 30년 후 건물매각
- ▶ (서울시) SH 공사에 토지지원리츠 출자금 지원
- ▶ (SH공사) 출자자·사업지원, 사업자 공모
- ▶ (기 금) 출자자
- ▶ (리 츠) 자금조달, 토지매입·임대, 30년 후 건물 매입
- ※ (AMC) 리츠 설립 및 운영, 건설관리, 자산매입, 주택관리



- 한편 안 제10조제2항은 사회주택 공급주체와 관련하여 그 간 '서울시장 등'이 주택관련 사회적 경제주체들과만 공동으로 시행할 수있도록 규정되어 있던 것을³), 이미 시행 중인 리츠도 공동사업자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.
  - 다만, 현재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집합투자기구(이하 '펀드')는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, 펀드가 참여할 경우 자금조달은 수월해지는 반면 수익성을 전제로 하는 사업이라는 편견

<sup>3) 「</sup>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 10조(시장 등의 공동사업 추진) 시장 등은 주택임대 및 주택관리 사업 등 주택사업에 대하여 자본금 및 현물의 출자, 인력 등의 지원을 통해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합의 등 펀드 참여 여건이 형성되었을 때 해당 사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.

| 개 정 안                      | 수 정 안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10조(시장 등의 공동사업 추진) ②      | 제10조(시장 등의 공동사업 추진) ② |
| 시장 등은 「부동산투자회사법」에 따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「자본시장과        | <u>와 공동으로</u>         |
|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집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<u>합투자기구와 공동으로</u> 사회주택 공급 |                       |
|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
| 담 당 자 | 도시계획관리위원회<br>입법조사관 윤 은 정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연 락 처 | 02-2180-8208             |
| 이 메일  | urbanth@seoul.go.kr      |

#### 【붙임 1】관련 규정

#### ○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5. 28.>

-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 <신설 2014. 5. 28.>
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 <개정 2014. 5. 28.>

#### ○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

제3조(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대한 지원) 시장·자치구청장·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(이하 "시장 등"이라 한다)은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7. 14.>

- 1. 자금·인력지원 및 현물출자
- 2. 사회주택 건설 택지의 제공
- 3. 사회주택의 관리·위탁
- 4. 사회주택의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융자 또는 보조
- 5. 사회주택 관리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
- 6. 사회주택 건설·재건축·리모델링 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
- 7. 사회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거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
- 8. 그 밖에 시장이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9조(도시개발 등을 통한 사회주택 택지 마련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거나 재정비할 때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공급할 수 있는 택지를 확보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7. 13.>

- 1. 「도시개발법」에 따른 도시개발계획
- 2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 정비계획
- 3.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도시재정비촉진계획

- 4. 「도시재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
- ② 시장은 도시개발구역 등의 체비지 등을 관련 규정 및 조례의 기준에 따라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대부할 수 있다.
- ③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시장 등과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공유재산인 토지를 대부할 수 있고, 대부료의 요율은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물품관리 조례」 제2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,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1. 4.>

제10조(시장 등의 공동사업 추진) 시장 등은 주택임대 및 주택관리 사업 등 주택사업에 대하여 자본금 및 현물의 출자, 인력 등의 지원을 통해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# 【붙임 2】 공공토지(건물) 임대형 사회주택 유형

|                   | 공공토지(건물) 임대형  |  |   |  |  |  |  |
|-------------------|---|--|---|--|--|--|--|
| <br>  구 분         | ETITION   | <b>사회주택</b> 려<br>※신규 <i>/</i>  | 빈집활용  |  |  |  |  |
| 구 분<br>           | <b>토지지원리츠</b><br>('18.10 ~ )  |  | 노후건물  | 토지임대부  |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| ,   | 공공토지 신축형   | 매입 리모델링형  | ('19년 ~ )  |  |  |  |
| 사 업 대 상           | 신 축   | 신 축  | 노후 주택 +<br>비주택  | 신 축  |  |  |  |
| 추 진 방 식           | ①사업부지제안<br>(사업자)<br>② 적격사업자 선정(SH)<br>③ 부지 매입(리츠)<br>④ 토지암대치계약체결<br>⑤주택건설·임대<br>(사업자) | ① SH소유토지<br>임차(리츠)<br>② 신축사업자 선정(市)<br>③ <u>건설자금 지원(리츠)</u><br>④주택건설·임대<br>(사업자) | ① 노후 건물 매입(리츠) ② 리모델링사업자 선정(市) ③ 리모델링자금 지원(리츠) ④ 리모델링후 임대(사업자)      | <ul> <li>③ SH매입부지<br/>공모(SH)</li> <li>② 적격사업자<br/>선정(市)</li> <li>③ 토지암대차계약체결</li> <li>④주택건설·임대(사업자)</li> </ul> |  |  |  |
| 사 업 규 모           | 250억원 내 규모제한<br>×   | 사업규모 제한 × 1개필지(330㎡ 내외)  사업규모 제한 × ※세운상가 인근 기존 APT ※ 주택 용도변경 가능 비주택              |   | 2개필지 통합 공모<br>※ CICRS호 / CICRB량  |  |  |  |
| 사 업 기 간           | 최대 30년  | 최대 30년   | 최대 30년  | 최대 40년   |  |  |  |
| 사업자부담<br>토지임대료    | 연 1%(임대료 인상×)<br>※ 市 예산 지원(1%)  | 토지·건물임대료 부담 ×<br>임대수입의 15% 사업자에게 귀속  |   | 연 1%(2년 2% 인상)<br>※ 10년마다 토지 재김평   |  |  |  |
| 건 설 자 금<br>조 달    | 주택도시기금 +<br>HUG(HF) 보증대출 +<br>자부담(10%) HF 보증대출(리츠) +<br>건설자금 대출(리츠) (2                |  | 주택)도시재생기금(市)<br>지원<br>비주택)리모델링비 지원<br>(市)<br>(2억원) + 건설자금대<br>출(리츠) | HF 보증대출 + 자부담<br>※기존건물 철거비<br>지원(SH)   |  |  |  |
| 이 차 보 전<br>(보전기간) | 최대 2%<br>(최대 15년)   | 최대 2%<br>(최대 15년)  | -   | 최대 2%<br>(최대 15년)  |  |  |  |
| 사업종료시<br>건물 매입    | 준공시점 건설원가<br>※ SH에서 기준건축비<br>제시   | -  | -   | 준공시점 건설원가<br>※ SH에서 기준건축비<br>제시  |  |  |  |
| 입 주 자 격           | 무주택자, 도시근로자가구<br>월평균소득 70~120%<br>※ 1인 70%/<br>4인이상·맞벌이신혼부부<br>120%/그 외 100%          | 무주택자,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% 이하   |   | 무주택자,<br>도시근로자가구<br>월평균소득<br>70~120%   |  |  |  |
| 임 대 료             | 시세 80% 이하   | 시세 80% 이하 시세 80% 이하  |   | 시세 80% 이하  |  |  |  |
| 거 주 기 간           | <b>주 기 간</b> 최장 10년 최장 10년  |  | 최장 10년  | 최장 10년   |  |  |  |

# 【붙임 3】 그 외 사회주택 유형

|                   | 민간자산   | 재임대형   | SH자산 임대위탁형  |   |  |
|-------------------|--|--|---|---|--|
| 구 분               | <b>리모델링 보조금</b><br>지원형<br>('16년 ~'19년)<br>※신규사업 추진중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b>빈집살리기프로젝트</b><br>('15년 ~ '17년)<br>※신규사업 추진중단                    | 고시원<br>매입·리모델링형<br>('17년 ~ )  | <b>사회적주택</b><br>('19년 ~ )   |  |
| 사 업 대 상           | 노후 주택 + 비주택  | 노후 주택(공가)  | 노후 고시원  | 매입임대주택(다가구·원<br>룸)  |  |
| 추 진 방 식           | ① 리모델링 건물 제안(시업자)<br>② 적격사업자 선정(SH)<br>③ 사업약정 체결<br>④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(SH)<br>⑤ 리모델링후 임대(사업자) | ① 빈집 발굴 및 공모(市)<br>② 적격사업자 선정(市)<br>③ 공사비 지원(자치구)<br>④ 공사후 임대(사업자) | ① 노후고시원<br>매입(SH)<br>② 리모델링사업자<br>선정(市)<br>③ 임대차계약 체결<br>④ 리모델링후<br>임대(사업자) | ① 주택<br>신축·매입(SH)<br>② 운영기관 공모·선정<br>(주거복지재단)<br>③ 주택 임대차계약<br>체결<br>④ 임대운영(운영기관) |  |
| 사 업 규 모           | 연면적 100 <i>m²</i> 이상   | 방 3개 이상 주택   | 사업규모 제한 ×   | -   |  |
| 사 업 기 간           | 8년~10년   | 6년~8년  | 최대 20년  | 최대 20년  |  |
| 사업자부담<br>토지임대료    |  |  | 연 1%(2년 2%<br>인상)<br>※ 10년마다 토지 재감평   | 주택임대료 시세 30%  |  |
| 건 설 자 금<br>조 달    | 서울시가 리모델링비 지원<br>(1.8~2억원/동) +<br>자부담(사회투자기금 융자)   | 서울시가 리모델링비 지원<br>(2~4천만원/동) +<br>자부담(사회투자기금 융자)                    | 사회투자기금(최대<br>6억원) + 공모사업자<br>자부담  | -   |  |
| 이 차 보 전<br>(보전기간) | -  | -  | -   | -   |  |
| 사업종료시<br>건물 매입    | -  | -  | 사업종료시점<br>감정평가액   | -   |  |
| 입 주 자 격           | 무주택자, 도시근로자가구 원  | 실평균소득 70% 이하   | 무주택자,<br>도시근로자가구<br>월평균소득 70% 이하  | 대학생 등,<br>도시근로자가구<br>월평균소득 70% 이하   |  |
| 임 대 료             | 시세 80% 이하  | 시세 80% 이하  | 시세 80% 이하   | 시세 50% 이하   |  |
| 거 주 기 간           | 최장 8~10년   | 최장 6~8년  | 최장 10년  | 최장 6년   |  |

### 【붙임 4】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 개요

#### ○ 사업개요

- (사업구조) 토지지원리츠가 토지를 매입하여 사회적 경제주체에 임대
- (출자구성) SH공사와 주택도시기금이 연도별로 1:2로 출자 ※ SH공사 출자금은 서울시에서 예산 편성 후 출자
- (사회적경제주체) 서울시(SH)가 공모 선정하고 자기책임으로 주택 건설 ※ 30년 사회주택으로 운영 후 건물은 리츠에 매각
- (사업규모) 토지매입비 250억원 내 규모제한 없음
- (토지임대료) 연1%(임대료 인상 없음) ※ 市 예산 지원(1%)
- (사업종료시 건물매입) 준공시점 건설원가 ※ SH공사에서 기준건축비 제시

#### ○ 추진경위

- 2017.11. :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 제안(市 ⇨ 국토부)

- 2018.03. : 「18년 사회주택 공급활성화 계획」(市)

- 2018.11. : 「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 출자안」이사회 및 시의회 의결

- 2018.12. : 1차 사업자 공모

- 2019.02. : 주택도시기금 기금출자 승인(800억 원)

- 2019.03. :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 영업등록 및 영업개시

# ○ 재원조달 구조

(2020. 6월 기준, 단위 : 억 원)

| 구 분        |      |        | 비 율   | '18~'19년 | 비고     |
|------------|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--|--------|
| 사업비(토지매입비) |      |        | 100%  | 2.100    |        |
| 재원<br>조달   | 자기자본 | 공사     | 33.3% | 700      | 보통주    |
|            |      | 주택도시기금 | 66.7% | 1.400    | 우선주    |
|            | 타인자본 | 회사채 발행 | _     | _        | 필요시 발행 |
| 합 계        |      | 100%   | 2.100 |          |        |